

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411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06년 4월 21일

제안자 : 김문천 의원외 4인

□ 수정이유

-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원중 관련분야의 지식을 갖춘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□ 주요골자

- 안 제8조 제2항 중 “7인”을 “9인”으로 함.
- 안 제8조 제4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4인”으로 함.

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7인”을 “9인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4항 제2호 중 “2인”을 “4인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<u>7인</u>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은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환경관련 단체 임원, 자동차관련 전문가 등 <u>2인</u> 이내</p> <p>3. (생략)</p> <p>⑤ - ⑥ (생략)</p>	<p>제8조(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<u>9인</u>.....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</p> <p>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2.<u>4인</u>.....</p> <p>3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- ⑥ (제정안과 같음)</p>